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지오멕스소프트
❑ **대상품목** : GIS 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CCTV자산관리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009,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지오멕스소프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지오멕스소프트
❑ **대상품목** : GIS 시스템, 영상반출시스템, CCTV자산관리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9,009,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지오멕스소프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굿링크

❑ **대상품목** : 저장/분배서버(H/W), 영상회의시스템, 3gen스토리지, 패스워드관리솔루션 , 함체제어시스템, 초등학교연계방화벽, SAN・서버팜・네트워크스위치, 스마트관제서버,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L3스위치, VPN, DMZ 방화벽, 웹방화벽, 서버보안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027,8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굿링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굿링크

❑ **대상품목** : 저장/분배서버(H/W), 영상회의시스템, 3gen스토리지, 패스워드관리솔루션 , 함체제어시스템, 초등학교연계방화벽, SAN・서버팜・네트워크스위치, 스마트관제서버,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L3스위치, VPN, DMZ 방화벽, 웹방화벽, 서버보안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027,8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굿링크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굿링크
❑ **대상품목** : 통합관제/저장분배솔루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0,005,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굿링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굿링크
❑ **대상품목** : 통합관제/저장분배솔루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0,005,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굿링크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휴네시온
❑ **대상품목** : 조기경보시스템(망연계 장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59,25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휴네시온
❑ **대상품목** : 조기경보시스템(망연계 장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59,25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송우인포텍
❑ **대상품목** : 차번인식시스템, 메타모빌,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시스템관리S/W, 인포트렌드스토리지, 영상회의시스템(IPWALL, 운영서버, 비디오 네트워크 장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거가대교 차번인식 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7,269,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송우인포텍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 · 공급사** : ㈜송우인포텍
❑ **대상품목** : 차번인식시스템, 메타모빌,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시스템관리S/W, 인포트렌드스토리지, 영상회의시스템(IPWALL, 운영서버, 비디오 네트워크 장비,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거가대교 차번인식 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7,269,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 · 공급사 : ㈜송우인포텍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시큐어월
❑ 대상품목 :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627,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시큐어월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시큐어월
❑ 대상품목 :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NAC)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627,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시큐어월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이노뎁
❑ **대상품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패키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버, 스토리지, SAN스위치), 조기경보시스템 (RTSP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6,204,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이노뎁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이노뎁
❑ **대상품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패키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버, 스토리지, SAN스위치), 조기경보시스템 (RTSP 서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6,204,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이노뎁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에스네트웍스(주)

❑ **대상품목** : 백본스위치, HP스토리지, 시각동기화서버, 방화벽, 환경감시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1,942,025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에스네트웍스(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거제시

❑ **제조·공급사** : 에스네트웍스(주)

❑ **대상품목** : 백본스위치, HP스토리지, 시각동기화서버, 방화벽, 환경감시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이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이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1,942,025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 거제시 (인)

제조·공급사 : 에스네트웍스(주) (인)